

# 스리랑카(Sri Lanka)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1958년(적립금고) 및 1980년(신탁 자금)

## 2 제도형태

- 적립금고제도 및 신탁자금제도
  - ※ 공공 및 민간 부문 사용자는 근로자에 의해 소유되고 관리되는 신탁자금을 매월 보험료 납부. 기금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며 보조금 성격의 노령, 장애 및 유족급여를 제공함

## 3 적용대상

- 적립기금 : 민간 부문 근로자
  - 적용제외 : 자영자, 가족근로자, 공무원, 농민, 어민
  - 동등한 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는 적용제외 가능
  - 특별제도 : 공공부문 및 지방정부 근로자, 농민, 어민
- 신탁자금 : 견습생, 임시직, 계약직, 정율근로자를 포함한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
  - 임의적용 : 자영자 및 이주노동자
  - 적용제외 : 가사노동자, 소규모의 자선 기업 및 종교 단체에서 일하는 근로자, 가족근로자

## 4 재원조달

- 가입자
  - 적립기금 : 월 소득의 8%; 추가 임의보험료 납부 가능
  - 신탁자금 : 없음
- 자영자
  - 적립기금 : 정보 없음
  - 신탁자금 : 월 최소 500 루피(rupees); 추가 임의보험료 납부 가능
- 사용자
  - 적립기금 : 월 임금지급총액의 12%
  - 신탁자금 : 월 임금지급총액의 3%
- 정부
  - 적립기금 : 없음
  - 신탁자금 : 없음; 사용자로서 기여함

## 5

##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## ○ 노령급여

## • 노령급여(적립기금)

- 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한 55세 남성 또는 50세 여성; 정부에 의해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, 영구 출국 시, 여성 근로자가 결혼한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지급
  - 조기인출 : 특정 주거 및 의료비용을 재원하기 위해 부분적인 인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. 기금 가입자는 일반퇴직연령보다 어려야 하며,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하며, 보험가입 기간 최소 1년 이상, 최소 3,000 루피(rupees)의 계좌 잔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  - 대출제도 : 기금 가입자는 계좌 잔고를 담보로 집을 구매 또는 짓거나; 존재하는 집을 보수, 유지, 또는 연장하기 위해; 월 담보대출상환금액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음
- 노령급여(신탁자금) : 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한 60세인 자; 기금 가입자가 퇴직, 사임, 해고, 직장 변경, 영구 이민, 또는 다른 정부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경우 연령무관

## ○ 장애급여

- 장애급여(적립기금) : 영구적이고 완전근로불능으로 판정되어야 하며 장애로 인해 근로를 중지했어야 함
- 장애급여(신탁자금) : 영구적이고 완전근로불능으로 판정되어야 하며 장애로 인해 근로를 중지했어야 함

## ○ 유족급여

- 유족급여(적립기금) : 퇴직 전 기금 가입자 사망 시, 법적 상속인 또는 지명된 수혜자에게 지급됨
- 유족급여(신탁자금) : 기금 가입자가 계좌 잔액 전체를 인출하기 전에 사망 시 법적 상속인, 유언 집행자, 또는 지명 유족에게 지급됨
- 사망수당(신탁자금) : 보험가입 기간 최소 1년 이상의 가입자 사망 시 법적 상속인, 유언 집행자, 또는 지명 유족에게 지급됨

## 6

##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 ○ 노령급여

## • 노령급여(적립기금)

- <총 근로자 및 사용자 보험료 납부액 + 배당금 + 경과이자 - 이전 인출액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- 이자율은 연 10.5%임
- 이자율 조정 : 근로자 적립기금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이자율 지정. 연 이자율은 최소 2.5%임
- 조기인출 : 계좌 잔고의 최대 30%까지 부동산, 주택 건설, 주택담보대출, 또는 필요한

-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인출될 수 있음, 기금 가입자는 첫 번째 인출 날짜 이후로 10년의 대기 기간을 가진 후에 계좌 잔액의 최대 30%까지의 두번째 인출을 할 수 있음
- 대출제도 : 기금 가입자 계좌 잔고의 최대 75%까지 담보로 잡아 인증된 대출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음
- 노령급여(신탁자금)
  - <총 근로자 보험료 납부금 + 배당금 + 경과이자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  - 급여는 기금 가입자가 사용자의 변화가 있을 시 5년의 대기 기간 이후에 지급됨

○ 장애급여

- 장애급여(적립기금)
  - <총 근로자 및 사용자 보험료 납부금 + 경과이자 - 이전 인출액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  - 이자율은 연 10.5%임.
  - 이자율 조정 : 근로자 적립기금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이자율 지정. 연 이자율은 최소 2.5%임
- 장애급여(신탁자금) : <총 근로자 및 사용자 보험료 납부금 + 배당금 + 경과이자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
○ 유족급여

- 유족급여(적립기금)
  - <총 근로자 및 사용자 보험료 납부금 + 경과이자 - 이전 인출금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들 사이에 나눠짐
  - 이자율은 연 10.5%임
  - 이자율 조정 : 근로자 적립기금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이자율 지정. 연 이자율은 최소 2.5%임
- 유족급여(신탁자금) : <총 근로자 및 사용자 보험료 납부금 + 배당금 + 경과이자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- 사망수당(신탁자금) : 100,000 루피(rupees)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
---

**7      관리운영기관**

---

- 노동부(Department of Labour)
  - 노동 및 노동조합 관계부(Ministry of Labor and Trade Union Relations) 산하 부처
  - 적립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 감독
  - <http://www.laboutdept.gov.lk>
- 근로자적립금고(Employees' Provident Fund)
  - 지역사무소를 통한 적립기금제도 관리
  - <http://www.epf.lk>

- 근로자 적립금고 대행업무 그룹(Employees' Provident Fund Agency Services Group)
  - 스리랑카 중앙은행(Central Bank of Sri Lanka) 산하기관
  - 보험료 징수, 근로자적립금고 자산에 대한 투자
  - <https://www.cbsl.gov.lk>
  
- 국가정책 및 경제사정부(Ministry of National Policies and Economic Affairs)
  - 신탁자금제도에 대한 전반적 관리
  - <http://www.mnpea.gov.lk>
  
- 근로자 신탁자금제도(Employees' Trust Fund Board)
  - 신탁자금 급여 지불
  - <http://www.etfb.lk>

<2018년 ISSA 자료>